
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81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6. 5. 25. 
제출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군민독서실 폐관 및 향후 별도의 운영 계획이 없음에 따라, 해당 시설의 관리·운영 근거인 현행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별도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나. 기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- (2) 입법예고(2026. 1. 29. ~ 2. 19.) 결과 : 의견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